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 〉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510호)

202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리 공간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	2

I. 제안경위

2022년 5월 6일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리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조리 공간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

개정안은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안 제13조제2항),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생략) <u><신설></u>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급식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조리공간”이라 한다)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이하 “조리초미세먼지”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3조의2(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

현행	개정안
	세면지를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식용유를 끓는 점 이상 가열하여 조리하는 경우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PM)과 이러한 입자상 물질에 흡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 생성되는데, 이는 발암성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¹⁾

환경부에서도 조리 방법에 따라 다량의 초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발표한 바 있음²⁾.

[조리방법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농도]

항 목	단 위	육류 튀기기	육류 삶기	육류 굽기	생선 굽기	일반주택 평균
초미세먼지(PM _{2.5})	μg/m ³	269.0	119.0	878.0	3,480.0	48.9
총휘발성유기화합물	μg/m ³	1,464.4	456.6	973.3	1,520.9	635.6

자료 : 환경부

1) WHO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10), 「Household Use of Solid Fuels and High-temperature Frying」

2) 2015. 12. 24. 환경부 보도자료 ‘조리할 때 실내 오염물질 배출 주의...30분 이상 환기 필수’

또한 1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 노동자가 2021년 4월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이후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급식실 조리사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급식실 조리 종사자 산재신청 및 인정 전체 현황]

- (산재신청) 총 64건(폐암)(‘22.6.9.기준)
- (승인/불승인) 43명* / 6명
 - * 승인자 중 학교 급식실 근무 경험자 41명, 불승인자 중 1명은 본인 반려
- (진행 중) 15명*
 - * 질병심의위원회 재심의예정 6명 포함

자료 : 고용노동부

이처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급식실 등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를 실태조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3조³⁾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하여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⁴⁾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⁵⁾에서는 대기환경 개선 및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

-
- 3) **법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4)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사업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일부 입증되었고, 학교 급식실 근무자에게 폐암이 발생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리초미세먼지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조리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6)에서는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실제 환경부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7)를 개정하여 조리 공간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명시할 계획이므로, 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안 제13조의2 제1항의 시범사업 대상과 관련하여 조리 공간에 한정하기 보다는 유사입법례8)를 참고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

6) 동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동법 시행규칙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체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8)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0조(시범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